

연무경기규정

[제정 1999.03.27]

개정 1999.06.05.

개정 2002.01.01.

개정 2005.03.12.

개정 2008.07.10.

개정 2012.01.07.

개정 2013.01.26.

개정 2014.02.15.

개정 2015.02.14.

개정 2016.05.07.

개정 2017.01.14.

개정 2018.01.13.

개정 2018.03.25.

개정 2019.01.12.

개정 2020.01.11.



사단법인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제3장 연무경기규정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민국의합기도총협회(이하 “협회” 라고 한다.)와 산하회원단체 및 소속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모든 대회를 통일된 연무경기규정으로 공정하고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2019.01.12)

【해설】

- ① 합기도의 모든 연무경기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이 규정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기는 합기도경기로서 인정될 수 없다. (개정2016.05.07)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협회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모든 대회의 연무경기에 적용한다. 본 협회의 승인을 받은 시·도협회 및 산하회원단체 또는 협회가 승인한 대회의 규정으로 적용한다.

제3조 연무경기의 종목

이 규정이 인정하는 합기도 연무경기의 종목은 다음과 같다.

1. 연무경기 (개정2018.01.13)

일정한 기준을 두고 심판의 채점으로 순위를 정하는 경기를 말한다.

- 1) 호신술경기 : 합기도의 원리에 의한 치기, 찌기, 던지기 등의 기술로 상대를 제압하는 경기
- 2) 발차기경기 : 합기도의 모든 발차기 기술을 포함하며 지정발차기와 자유발차기로 나누어 경기를 할 수 있다.
- 3) 자유연무경기 : 발차기, 호신술, 낙법, 기계체조 등을 포함한 기술을 정해진 시간 내에 자유롭게 구성하여 연무하는 경기
- 4) 단체연무경기 : 합기도 기술을 정해진 인원과 시간 내에 연무하는 경기
 - ① 종합단체연무경기: 성별, 부별의 제한이 없으며, 10명이상 30명 이내의 선수구성으로 7분 이내에 합기도의 기술을 연무하는 경기

② 단체연무경기6인제: 각 부별로 제한이 있으며, 6명의 선수구성으로 5분 이내에 합기도의 기술을 연무하는 경기

③ 단체연무경기8인제: 각 부별로 제한이 있으며, 8명의 선수구성으로 5분 이내에 합기도의 기술을 연무하는 경기

5) 호신형경기 : 합기도의 모든 기술을 정해진 시간 이내에 자유롭게 구성하여 연무하는 경기를 말하며, 맨손형과 무기형으로 나뉘며, 부별과 성·별 구분을 한다.

① 맨손형경기 : 반드시 맨손으로만 연무해야 한다.

② 무기형경기 : 경기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득한 무기로 연무해야 한다.

(개정2013.01.26)

6) 기록경기 : 지정된 기술을 공인된 계측기를 통하여 순위를 정하는 경기를 말하며, 부별과 성별구분을 한다.

① 길이낙법 : 합기도의 회전낙법(구르기)으로 멀리 장애물을 넘는 경기.

② 높이낙법 : 합기도의 회전낙법(구르기)으로 높이 장애물을 넘는 경기.

제4조 부별 구분

1. 연무 경기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구분되며 부별로 시행될 수 있다.

2. 개인전과 단체전은 4명, 4팀 이상 참가하여야 하며 4명, 4팀 이하일 경우 성립되지 않으므로 그 종목의 경기는 취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회요강을 통하여 사전에 출전단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경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2명이하의 출전경기는 취소한다. (개정2017.01.14)

4. 개인전

1) 개인전의 경기 종목은 호신술경기, 호신형경기, 발차기경기, 기록(낙법)경기, 자유연무경기로 한다.

2) 개인전에서 가능한 부별 구분은 [표-1]과 같다.

부 별	자 격
①초등1부	초등학교 1학년~2학년에 재학중인 사람.
②초등2부	초등학교 3학년~4학년에 재학중인 사람.
③초등3부	초등학교 5학년~6학년에 재학중인 사람.
④중등부	중학교에 재학중인 사람
⑤고등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사람
⑥대학일반부	대학교에 재학중인 사람 및 만19세 이상의 일반인

[표-1] 부별 구분표

【해설】

- ① 대회 규모와 성격에 따라 경기위원회에서 위의 부별 구분표에서 정할 수 있다.
 - ② 청소년부 대회 일 경우에는 중등부, 고등부를 대상으로 한다.
- 3) 남자부와 여자부 구분을 원칙으로 하며 대회 규모와 성격에 따라 통합할 수 있다.
- 4) 경기종목에 따라 여자부가 배정되지 못하는 종목이 있을 수 있다.
5. 단체전
- 1) 단체전의 경기 종목은 호신술경기, 호신형경기, 발차기경기, 기록(낙법)경기, 자유연무경기, 단체연무경기로 한다.
 - 2) 단체전의 부별 구분은 개인전과 동일하며 성별 단체구성은 남자단체전, 여자단체전, 혼성단체전으로 시행 될 수 있다.
 - 3) 종목에 따라 단체전 구성방식 및 구성인원은 변경될 수 있다.
단, 이를 정하는 대회개최계획(안)은 경기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단체전의 구분은 [표-2]와 같으며 대회요강에 따라 부별 통합할 수 있다.
- (개정2013.01.26)

부별 인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
6인제	○	○	○	○
8인제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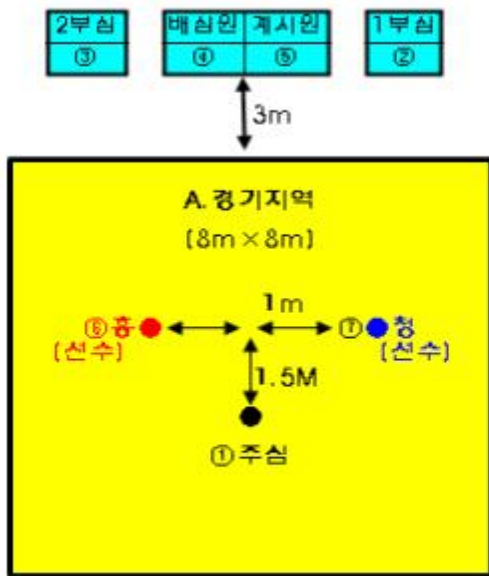
[표-2] 단체전 구분표

제5조 경기장

연무경기 및 기록경기의 경기장은 장애물 없이 수평을 이루는 탄력성 있는 매트로 한다. 단, 종목의 특성과 단체전의 규모에 따라 경기장의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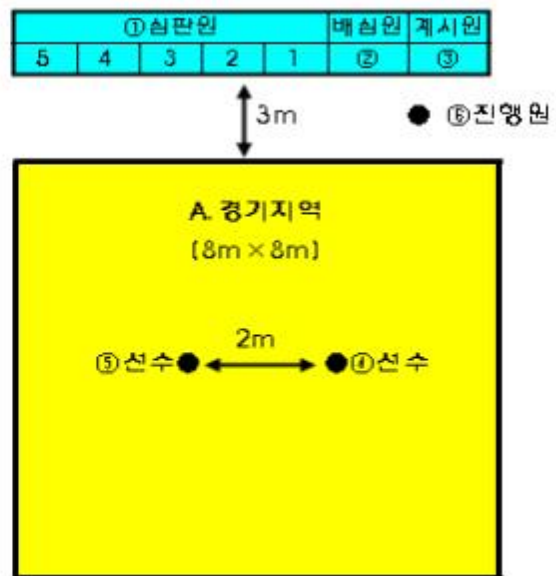
1. 호신술 경기장 (개정2020.01.11.)

1) 토너먼트전 일 경우



[그림-1]술기경기장(토너먼트전)

2) 종합점수전 일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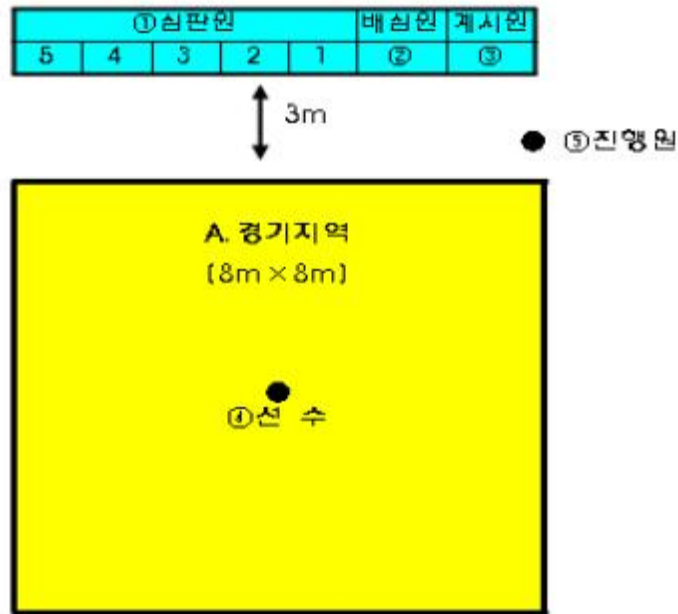
[그림-2]술기경기장(종합점수전)

3) 단체전 일 경우

- (1) 단체전 일 경우에는 12m×12m 정방형으로 하며 위의 “2)” 종합점수전 일 경우의 경기장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 (2) 단체전의 경우 종합점수전 방식만 적용되기 때문에 심판원의 위치는 종합점수전과 동일하여야 한다.
- (3) 점수토너먼트전 일 경우에는 [그림-1],[그림-2]의 경기장을 병행하여 사용한다.

2. 무기술 경기장

- 1) 무기술 종목의 경기장은 [그림-2]호신술경기장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다.



[그림-3] 무기술 경기장

3. 발차기 경기장

- 1) 발차기 경기장은 4m x 12m로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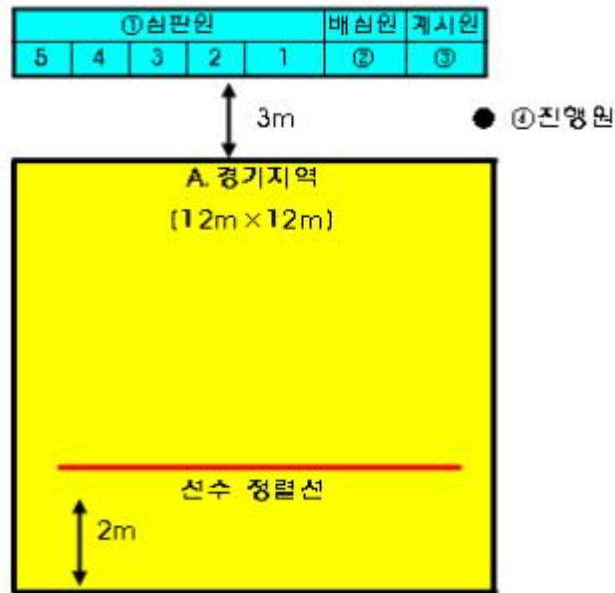
[그림-4] 발차기 경기장

4. 호신형경기장

- 1) 호신형경기장은 8m x 8m로 설치한다.
- 2) [그림-2]술기 경기장, [그림-3] 무기술경기장과 동일하다.

5. 단체연무 경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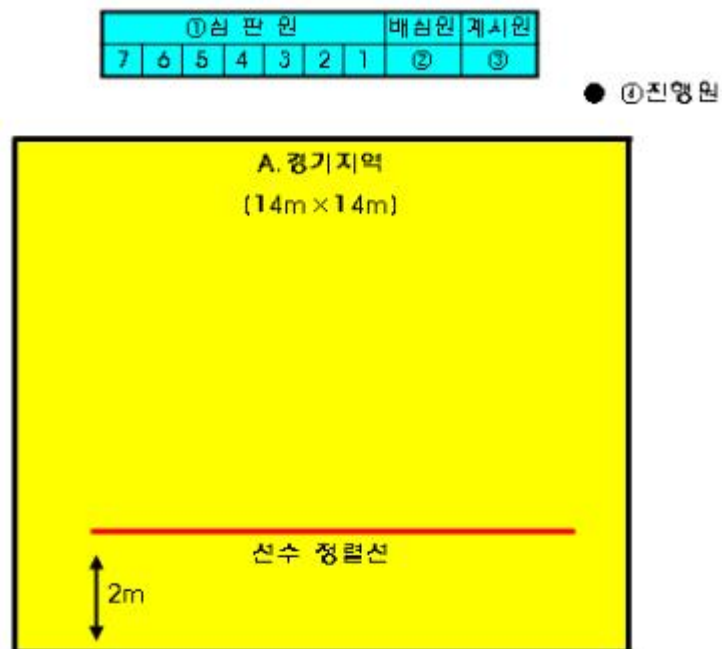
- 1) 단체연무 경기장은 12m x 12m로 설치하며 2m이내로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



[그림-5] 단체연무 경기장

6. 종합단체연무 경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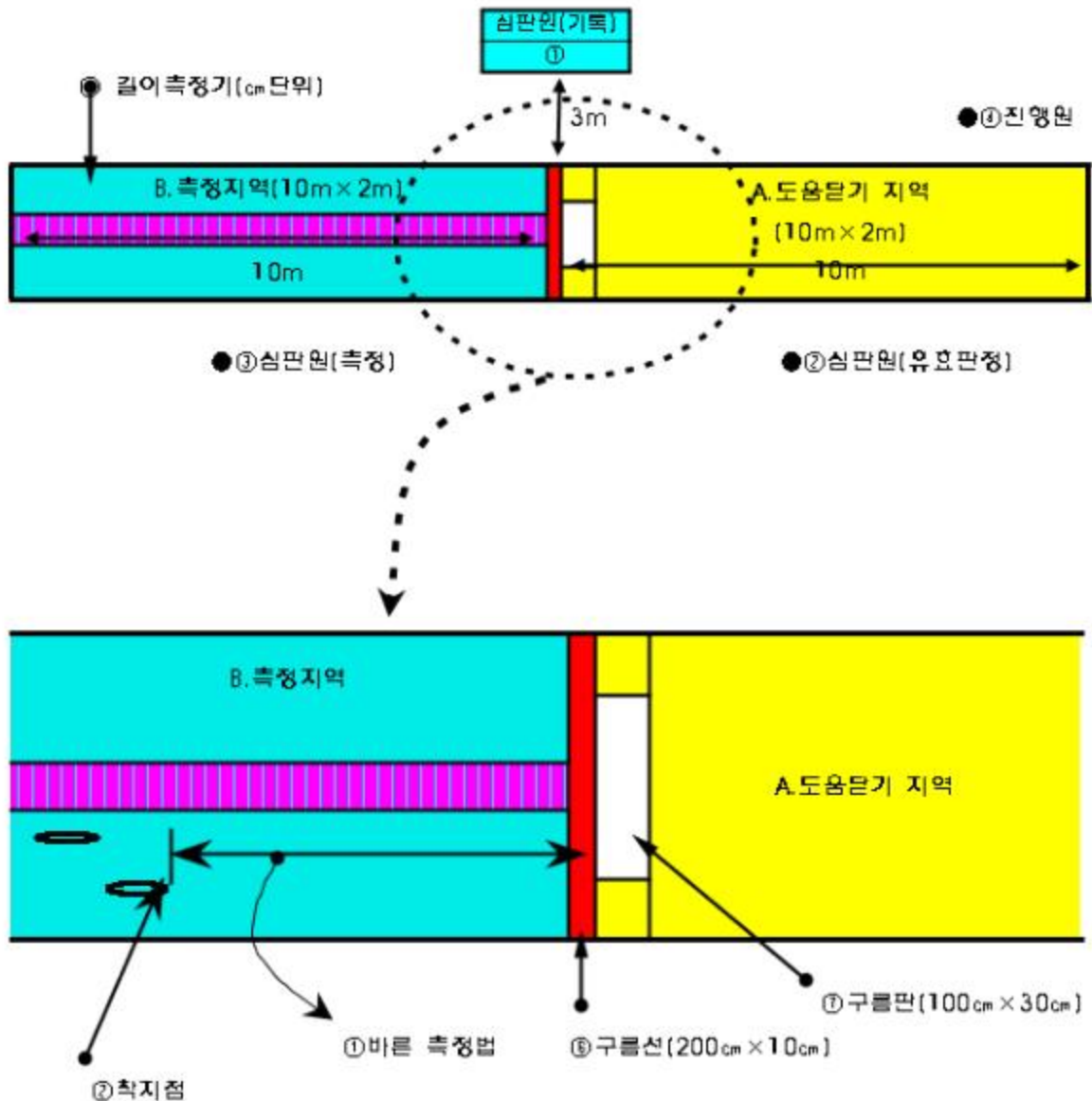
- 2) 종합단체연무 경기장은 14m × 14m로 설치하며 2m이내로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



[그림-6] 종합단체연무 경기장

7. 길이낙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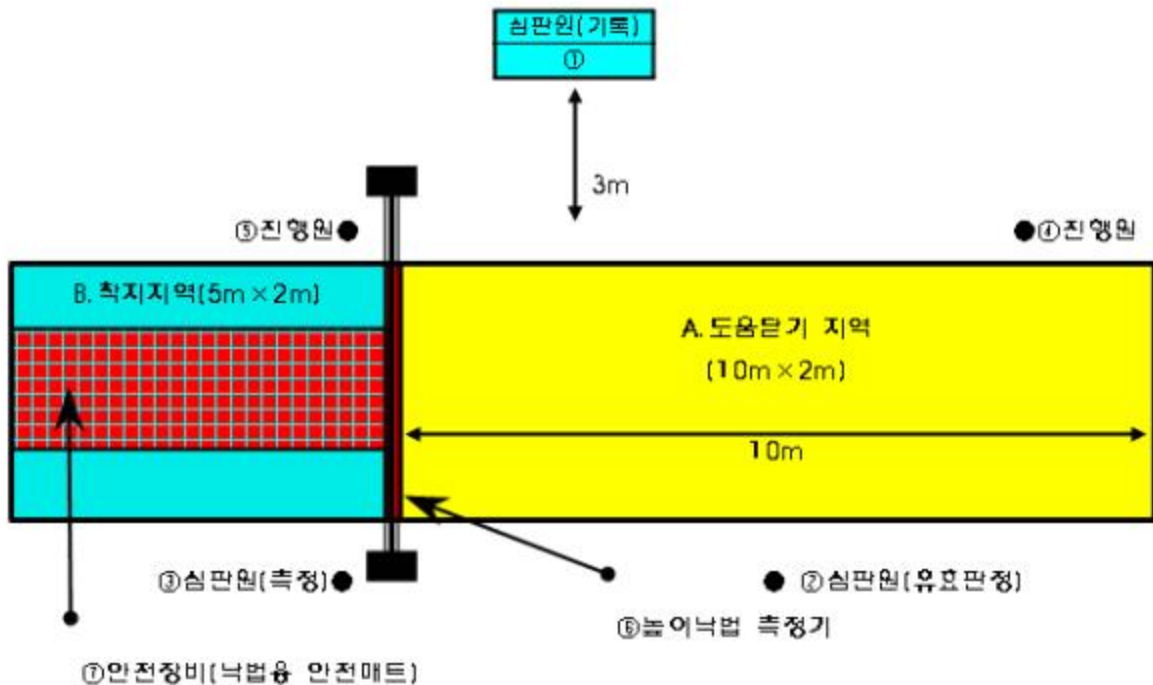
- 1) 길이낙법 경기장은 20m×2m의 탄력성 있는 매트로 설치한다.
- 2) 도움닫기 지역 10m×2m, 측정지역 2m×10m 로 제한한다.
- 3) 발구름은 구름판에서 해야 하며 구름선을 넘었을 때는 실패시기가 된다.
- 4) 구름판에서 측정지역에 가까운 경계선을 구름선이라 하며 측정시 시작점은 구름선으로 한다.
- 5) 측정시 구름선에서 직각으로 착지점까지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 6) 대회 성격에 따라 경기위원회에서 승인할 경우 안전한 범위 내에서 스펀지 재질의 장애물용 공인 사각매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림-7] 길이낙법 경기장

8. 높이낙법

- 1) 높이낙법 경기장은 15m×2m의 탄력성 있는 매트로 설치한다.
- 2) 도움닫기 지역 10m×2m, 착지지역 5m×2m 로 제한한다.
- 3) 높이낙법 측정기는 경기위원회에서 승인한 공인용품으로 제한한다.



[그림-8] 높이낙법 경기장

제6조 경기 방식

1. 경기방식은 개인 토너먼트전(Single Elimination Tournament), 종합점수전, 점수토너먼트전으로 구분한다.
2. 경기방식 및 경기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회개최계획(안)을 통해 사전에 정해져야 한다.

제7조 연무경기 방법

1. 호신술경기

- 1) 개인전 호신술경기의 구성은 [표-3]과 같이하며, 각종목별로 ①,②,③,④ 순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회개최계획(안)의 공지에 따라 자유로운 술기의 구성도 가능하다.

(개정2017.01.14), (개정2020.01.11.)

술기 종목	내 용	비 고
1종목	① 같은손목 칼넣기(1단 승단심사 지정술기) ② 같은손목 손등제쳐꺼기(1단 승단심사 지정술기) ③ 안손목 잡혔을때 1수(자유술기) ④ 양손목 잡혔을때 1수(자유술기)	(지정술기 2수) (자유술기 2수)
2종목	① 소매수(중간) 팔굽감아꺼기(1단 승단심사 지정술기) ② 먹살바로잡은손 꺼기(1단 승단심사 지정술기) ③ 앞에서 안았을때 1수(자유술기) ④ 뒤에서 안았을때 1수(자유술기)	(지정술기 2수) (자유술기 2수)
3종목	① 안손목수 손등제쳐꺼기(1단 승단심사 지정술기) ② 안손목수 앞쪽돌아꺼기(1단 승단심사 지정술기) ③ 허리띠 잡혔을때 1수(자유술기) ④ 조르기수 1수(자유술기)	(지정술기 2수) (자유술기 2수)
4종목	① 방권술 치기 1수(자유술기) ② 방권술 꺾기 1수(자유술기) ③ 방족술 치기 1수(자유술기) ④ 방족술 꺾기 1수(자유술기)	(자유술기 4수)
5종목	① 방검술(단검) 앞에서 찌를때 1수(자유술기) ② 방검술(단검) 위에서 찌를때 1수(자유술기) ③ 방검술(단검) 옆에서 찌를때 1수(자유술기) ④ 방검술(단검) 자유술기 1수(자유술기)	(자유술기 4수)
6종목	① 선술 1수(자유술기) ② 연행수 1수(자유술기) ③ 단봉수 1수(자유술기) ④ 단장술 1수(자유술기)	(자유술기 4수)

[표-3] 술기 종목표

- 2) 단체전은 다양한 술기를 조화롭게 연무하며 소품의 사용도 가능하다.
- 3) 경기방식은 토너먼트전, 종합점수전으로 할 수 있으며 사전에 대회개최계획 (안)을 정하여 서면으로 출전단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 ① 토너먼트전 : 개인 토너먼트전(Single Elimination Tournament)을 말하며 출전선수 8명이상 일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 ② 종합점수전 : 심판원의 최고, 최하점수를 뺀 나머지 총점으로 순위 결정하는 방식으로 출전선수의 수에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다.
- ③ 토너먼트전 일 경우에는 5심제로 진행하여 우세판정을 한다. (개정2017.01.14)

- 4) 출전 선수는 1명이며, 받기자는 성별과 부별이 같아야하며 출전선수등록 시 받기자로 함께 등록을 해야 한다.
- 5) 양 선수는 호신술을 [표-3]의 지정술기를 ①,②,③ 순으로 1수씩, 3회를 청, 홍순으로 번갈아 진행을 한 후 ④번 술기를 비교술기로 청, 홍 함께 진행하여 총4수를 한 후 우세판정을 한다. (개정2017.01.14)
 다만, 경기 당일 경기일정과 관련하여 경기위원회의 승인으로 호신술 지정술기의 수를 4수 이내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전선수들에게 사전 공지를 해야 한다. (개정2020.01.11.)
- 6) 심판원구성은 5명의 부심이 승패를 결정하는 5심제로써 부심은 진행주심의 판정이란 구호와 함께 즉시 청·홍의 부심 깃발을 들어 승·패를 가린다. (개정2016.5.07)
- 7) 받기자는 성별과 부별이 같아야 되며, 입상에서는 제외된다.
- 8) 무기로 사용되는 용품은 본 협회가 승인한 공인용품이거나 대회당일 경기위원회의 검사에 합격된 용품만 사용이 가능하다.
- 9) 모든 술기는 1회 연무 당 4수까지 끝내야 하며 마지막 제압수(끝처리)도 포함된다. (개정2014.02.15.)
- 10) 무리한 동작의 술기나 5수 이상의 술기 연무 시에는 감점의 대상이 되며, 100점 기준 1회시 1점을 감점한다. (개정2017.01.14)
- 11) [표-3]과 같이 지정술기를 하지 않고 규정위반 시 실격처리 한다. (개정2017.01.14)

2. 무기술

- 1) 무기술로 지정된 검술, 봉술(단봉, 중봉, 장봉), 쌍절곤 등을 1분 이내에 연무, 연출하여 순위를 가린다.
- 2) 단체전은 개인전의 방식과 동일하며 제4조 2항의 4)의 [표-2] 단체전 구분 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 3) 종합점수전 방식으로 5명의 심판원으로 구성하는 5심제로써 심판원의 최고, 최하 점수를 뺀 나머지의 총점으로 순위를 결정 한다. (개정2016.5.07)

3. 발차기

- 1) 지정종목인 기본발차기, 기술발차기, 특수발차기와 자유종목인 응용발차기로 나누어 실시한다.
- 2) 지정종목인 기본발차기는 목표물이 없이 실시하며 기술발차기는 목표물을 잡아주는 보조자를 선수가 준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조자가 준비 안 되는 경우 진행원이 이를 대신 할 수 있다.
- 3) 특수발차기의 목표물은 진행원이 잡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목표물의 높이는 선수의 신장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자유종목인 응용발차기는 30초 이상 1분 이내에 자유롭게 기술과 구성의 제한 없이 연무하며 격파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격파물과 보조자는 선수가 준비하여야 한다.
- 5) 경기 시 연무의 기회는 1회로 제한한다.
- 6) 종합점수전 방식으로 5명의 심판원으로 구성하는 5심제로써 심판원의 최고, 최하 점수를 뺀 나머지의 총점으로 순위를 결정 한다. (개정2016.5.07)

【해설】

- ① 기본발차기 : 제자리에서 한가지의 기술로 차는 발차기
- ② 기술발차기 : 두 가지 이상의 기술을 연결하여 차는 발차기
- ③ 특수발차기 : 도약하여 공중에서 차는 발차기
- ④ 응용발차기 : 기본발차기와 기술발차기를 응용하여 자유롭게 연출하는 발차기
- ⑤ 목표물과 격파물은 경기위원회가 인정하는 공인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경기 전에 심판원의 검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4) 진행순서

- (1) 기본발차기 : 선수번호 순으로 5명 단위 1조를 구성하여 동시에 실시한다.
- (2) 기술발차기 : 선수번호 순으로 5명 단위 1조를 구성하여 번호순으로 실시한다.
- (3) 특수발차기 : 선수번호 순으로 5명 단위 1조를 구성하여 번호순으로 실시한다.
- (4) 응용발차기 : 선수번호순으로 실시한다.

5) 부별 지정종목의 기술명칭 구분

(1) 기본발차기 : 모든 부별에 해당한다. (개정2016.5.07), (개정2020.01.11.)

- ① 뒤꿈치차올리기
- ② 안다리차기
- ③ 바깥다리차기
- ④ 앞차기
- ⑤ 발등찍어차기
- ⑥ 옆차기
- ⑦ 들어찍기
- ⑧ 뒤옆차기
- ⑨ 하단찍어차기
- ⑩ 하단안다리차기
- ⑪ 무릎차기

(2) 기술발차기

가. 초등부(초등1부, 초등2부, 초등3부)에 해당한다. (개정2016.5.07),
(개정2020.01.11.)

- ① 뒤돌려차기
- ② 하단앞아돌려차기
- ③ 안다리차고 바깥다리 차기(한발복식)
- ④ 안다리차고 옆차기(한발복식)
- ⑤ 뒤돌려차고 하단뒤돌려차기(한발복식)
- ⑥ 발등찍어차고 뒤옆차기(양발복식)
- ⑦ 발등찍어차고 뒤돌려차기(양발복식)

나.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에 해당한다. (개정2016.5.07.),
(개정2020.01.11.)

- ① 하단상단찍어차기(한발복식)
- ② 하단상단 옆차기(한발복식)
- ③ 안다리차고 바깥다리차기(한발복식)
- ④ 안다리차고 옆차기(한발복식)

- ⑤ 발등찍어차고 몸돌아 찍어차기 (한발복식)
- ⑥ 뒤돌려차고 하단뒤돌려차기(한발복식)
- ⑦ 상 · 중 · 하 연속뒤돌려차기 (한발복식)
- ⑧ 좌 · 우옆차기(양발복식)
- ⑨ 족기찌르고 옆차기(양발복식)
- ⑩ 족기찌르고 옆차고 뒷차기(양발복식/3방차기)

(3) 특수발차기 : 고등부, 대학일반부에 해당한다. (개정2016.5.07.)

- ① 족기찌르고 좌 · 우옆차고 뒷차기(양발복식/4방차기)
- ② 뛰어 들어가 뒤돌려차기
- ③ 뛰어 들어가 하단뒤돌려차기
- ④ 뛰어 양발 모아 앞차기
- ⑤ 뛰어 양발 벌려 앞차기
- ⑥ 뛰어 양발 모아 옆차기
- ⑦ 뛰어 양발 가위차고 앞차기(양발복식)
- ⑧ 뛰어 3단 앞차기 (양발복식)
- ⑨ 뛰어 3단 찍어차기 (양발복식)

6) 발차기 기술 구분표 (개정2016.5.07.), (개정2020.01.11.)

부별	기본 발차기	기술 발차기	특수발차기
초등부 (초등1부, 초등2부, 초등3부)	① 뒤꿈치차올리기 ② 안다리차기 ③ 바깥다리차기 ④ 앞차기 ⑤ 발등찍어차기 ⑥ 옆차기 ⑦ 들어찍기	① 뒤돌려차기 ② 하단앞아돌려차기 ③ 안다리차고 바깥다리 차기 ④ 안다리차고 옆차기 ⑤ 뒤돌려차고 하단뒤돌려차기 ⑥ 발등찍어차고 뒤옆차기 ⑦ 발등찍어차고 뒤돌려차기	해당 없음
중등부	⑧ 뒤옆차기 ⑨ 하단찍어차기	① 하단상단찍어차기	해당 없음
고등부	⑩ 하단안다리차기 ⑪ 무릎차기	② 하단상단 옆차기 ③ 안다리차고 바깥다리차기 ④ 안다리차고 옆차기 ⑤ 발등찍어차고 몸돌아 찍어차기 ⑥ 뒤돌려차고 하단뒤돌려차기 ⑦ 상·중·하 연속뒤돌려차기 ⑧ 좌·우옆차기 ⑨ 족기찌르고 옆차기 ⑩ 족기찌르고 옆차고 뒷차기	①족기찌르고 좌·우옆차고 뒤옆차기 ②뛰어들어가 뒤돌려차기 ③뛰어들어가 하단뒤돌려차기 ④뛰어 양발 모아 앞차기 ⑤뛰어 양발 벌려 앞차기 ⑥뛰어 양발 모아 앞차기 ⑦뛰어 양발 모아 옆차기 ⑧뛰어 양발 가위차고 앞차기 ⑨뛰어 3단 앞차기 ⑩뛰어 3단 찍어차기
대학일반부			

[표-4] 발차기 기술 구분표

4. 호신형경기

- 1) 형, 발차기, 술기, 낙법, 기계체조를 포함한 모든 기술을 정해진 시간 내에 자유롭게 구성하여 1분 이내에 연무하는 경기 (개정2013.01.26)
- 2) 음악사용은 가능하며 음향장비는 선수가 준비하여야 한다.
- 3) 종합점수전 방식으로 5심제의 심판원구성으로 최고, 최하 점수를 뺀 나머지의 총점으로 순위를 결정 한다.

5. 단체연무

- 1) 낙법, 발차기, 술기를 반드시 포함하여 시간 내에 정확성, 예술성, 난이도, 숙련도, 예의, 연출구성 등에 중점을 두어 연무하는 경기
- 2) 음악사용은 가능하며 음악장비는 선수가 준비하여야 한다.
- 3) 단체연무에 한하여 선수의 복장 및 장비는 경기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단, 도복을 입을 경우 협회의 지정도복을 착용해야 하며, 위반시 실격처리 된다. (개정2020.01.11.)
- 4) 복장의 사용되는 용품도 경기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 5) 종합점수전 방식으로 심판원의 최고, 최하 점수를 뺀 나머지의 총점으로 순위를 결정 한다.
- 6) 부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인원 \ 부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
6인제	○	○	○	○
8인제	○	○	○	○

[표-5] 단체연무 부별 구성표

6. 종합단체연무

- 1) 성별, 부별의 제한이 없으며 경기방식은 단체연무와 동일하다.
- 2) 인원구성은 10명이상 30명 이내로 제한한다. (개정2014.02.15)
- 3) 인원 구성을 각부(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로 구성 한 경우 총점 100점 기준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개정 2017.01.14)

제8조 기록경기

1. 낙법

- 1) 경기의 시기는 2회이며 지정된 순으로 실시한다.
- 2) 2차시기까지의 기록 중 상위 기록을 인정한다.
- 3) 낙법의 기술은 회전(구르기)낙법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2014.2.15)
- 4) 낙법 착지 시 정확히 두 손을 바닥에 대고 구르며 정확한 자세로 일어나 기본자세를 취해야 한다.
- 5) 도움닫기 하기 전에 경기장 중앙을 보고 입례하여야 하며 낙법 착지 후 기

본 자세를 취한 다음에도 경기장을 향하여 입례를 하여야 한다.

6) 경기 시작과 종료 시의 예의를 갖추지 않을 경우 감점의 대상이 된다.

2. 길이낙법

1) 도움달기의 허용지역은 길이 10m, 폭 1m이며 허용지역 내에서 도착해야 한다.

2) 1)의 지정된 지역을 벗어날 시에는 1차시기는 실격 처리된다.

3) 선수는 구름판에 한발이나 두발을 밟고 도착하여야한다. (100cm × 30cm)

4) 선수는 구름선을 밟지 않고 도착하여야한다. (200cm × 10cm)

길이측정이 시작되는 지점은 구름선이다.

5) 착지 시에는 규정된 장애물을 넘어 정확한 낙법의 자세로 안전하게 착지하여야하며 합기도의 기본자세(좌,우자세)를 취하여야만 점수로 인정된다.

단, 장애물이 없이 실시 할 수 도 있다.

6) 전자계측기가 없을 경우 백색 가루를 사용하며 손에 묻은 백색 가루가 경기지역내의 매트위에 표시되어야 한다. 그 표시된 지점을 착지점이라 한다.

단, 경기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착지점 지시봉을 사용 할 수 있다.

(개정2016.5.07)

7) 심판의 기록인정 판정이 있을 경우 구름선에서 착지점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착지점의 측정은 구름선에서 가장 가깝게 표시된 지점으로 한다.

8) 자세와 기술이 부족하여 무리한 동작이라고 판단될 때는 점수를 불인정하거나 선수의 보호를 위해 심판의 권한으로 출전 정지를 명할 수 있다.

9) 동일한 길이의 낙법 성공 시 공중자세와 착지자세의 정확도로 순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세로 인한 판정이 어려울시 신장이 낮은 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3. 높이낙법

낙법의 기술은 월장(구르기), 공중회전 기술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작 높이는 선수의 평균 신장 1/2 높이부터 시작하며 성공 시에는 높이를 10cm씩 증가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경기위원회에서 시작 높이와 증가 단위를 조정 할 수 있다.

- 2) 도움닫기의 허용지역은 길이 10m, 폭 1m이며 허용 지역내에서 도착해야 한다.
- 3) 전자계측기가 없을 경우 장애물로 사용되는 기준봉(Bar)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점수로 인정 된다.
- 4) 착지 시에는 정확한 낙법의 자세로 안전하게 착지하여야 하며 합기도의 기본자세(좌,우자세)를 취하여야만 점수로 인정된다.
- 5) 심판의 기록인정 판정이 있을 경우 계측기의 점수를 기록한다.
- 6) 자세와 기술이 부족하여 무리한 동작이라고 판단될 때는 점수를 불인정하거나 선수의 보호를 위해 심판의 권한으로 출전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7) 동일한 높이의 낙법 성공 시 공중자세와 착지자세의 정확도로 순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세로 인한 판정이 어려울시 신장이 낮은 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제9조 경기 시간

각 종목별 경기시간은 아래의 표와 같다. (개정2016.5.07), (개정2018.01.13)

경기 종목	경기 시간	시간 지연 및 감점
1. 호신술경기	시간제한 없음.	① 총점을 100점으로하고 1~10초 시간초과마다 2점을 감점한다. ② 1분 초과 또는 1분이상의 연무 동작을 정지 할 경우 실격처리 한다.
2. 무기술경기	1분 이내	
3. 발차기경기	응용발차기 적용 30초~1분	
4. 호신형경기	1분 이내	
5. 단체연무경기	5분 이내	
6. 종합단체연무경기	7분 이내	

[표-6] 종목별 경기시간

제10조 감점 및 실격

1. 종목별로 지정된 경기시간을 초과할 경우는 총점을 100점 기준시 1~10초당 초과시간마다 2점을 감점한다. (개정2018.01.13)
2. 경기 중 경기장을 벗어나 연무가 이루어 질 때 1회시 마다 100점 기준시 총점에서 1점을 감점한다. (개정2016.5.07)

- 경기 중 동작을 일시 정지할 경우 총점에서 1점을 감점한다.(개정2016.5.07)
- 단체전의 경우 선수의 불참으로 인해 단체구성에 미달 또는 초과하는 때는 실격 처리한다.
- 참가선수 중 부정선수 발견 시 실격 처리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
- 경기시간에 경기장 입장을 못할 경우 실격 처리한다.

제11조 종목별 부별 구분

1. 연무경기 : 6경기 12부 29종목(남,여 공용)

구 분	초등부	초등1부	초등2부	초등3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일반부
1. 호신술		○	○	○	○	○	○
2. 무기술		○	○	○	○	○	○
3. 발차기		○	○	○	○	○	○
4. 자유연무		○	○	○	○	○	○
5. 단체연무	○				○	○	○
6. 종합단체연무	부별 구분 없이 통합						

[표-7] 연무경기 종목별 부별 구분표

2. 호신형경기 : 12부 24종목(남,여 공용)

(단위: cm)

구 분	초등1부	초등2부	초등3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
1.맨손형	○	○	○	○	○	○
2.무기형	○	○	○	○	○	○

[표-8] 호신형경기 부별구분표

3. 기록경기 : 12부 24종목(남,여 공용)

(단위: cm)

구 분	초등1부	초등2부	초등3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
1.길이낙법	○	○	○	○	○	○
2.높이낙법	○	○	○	○	○	○

[표-9] 기록경기 부별구분표

4. 호신술경기 : 12부 54종목(남,여 공용)

구 분		초등1부	초등2부	초등3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일반부
호신술	1종목	○	○	○	○	○	○
	2종목	○	○	○	○	○	○
	3종목	○	○	○	○	○	○
	4종목				○	○	○
	5종목				○	○	○
	6종목				○	○	○

[표-10] 술기종목/구분표(남.여공용) (개정2017.01.14)

제12조 점수기준 및 배점

종목별 점수기준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1. 호신술경기

채 점 구 분	내 용	배 점
① 예 의	도복착용, 출전준비, 예의	10
② 숙 련 도	기술의 성공도 및 표현력	20
③ 난 이 도	기술의 난이도 및 예술성	20
④ 정 확 성	기술과 자세의 정확성	50

[표-11] 술기 점수기준표

2. 무기술경기

채 점 구 분	내 용	배 점
① 예 의	도복착용, 출전준비, 예의	10
② 숙 련 도	기술의 성공도, 표현	20
③ 난 이 도	기술의 난이도 및 예술성	20
④ 정 확 성	기술과 자세의 정확성	50

[표-12] 형 점수기준표

3. 발차기경기

채 점 구 분	내 용	배 점
① 기본발차기	정 확 성	20
② 기술발차기	정 확 성	20
③ 특수발차기	정 확 성	20
④ 응용발차기	기술의 난이도 및 정확성	20
⑤ 숙 련 도	기술의 성공도 및 표현력	20

[표-13] 발차기 점수기준표

4. 호신형경기

채 점 구 분	내 용	배 점
① 예 의	도복착용, 출전준비, 예의	10
② 숙 련 도	기술의 성공도, 표현	20
③ 난 이 도	기술의 난이도 및 예술성	20
④ 정 확 성	기술과 자세의 정확성	50

[표-14] 자유연무 점수기준표

5. 단체연무경기

채 점 구 분	내 용	배 점
① 예의 및 통일성	도복착용, 출전준비, 예의, 통일된 동작	20
② 숙련도	기술의 성공도, 표현	20
③ 난이도	기술의 난이도	20
④ 예술성	창작 및 연출력	20
⑤ 정확성	기술과 자세의 정확성	20

[표-15] 단체연무 점수기준표

6. 종합단체연무경기

채 점 구 분	내 용	배 점
① 예절 및 통일성	도복착용, 출전준비, 예의, 통일된 동작	20
② 숙련도	기술의 성공도, 표현	20
③ 난이도	기술의 난이도	20
④ 예술성	창작 및 연출력	20
⑤ 정확성	기술과 자세의 정확성	20

[표-16] 종합단체연무 점수기준표

제13조 동점의 처리

1. 동점일 경우 점수기준별 정확성, 난이도, 숙련도의 순으로 최고점수를 우선한다.
2. 종합단체연무는 1항의 최고점수 우선순위에서도 동점인 경우 출전인원이 많은 순으로 우선한다.
3. 1항과 2항의 최고점수 우선순위에서도 동점일 경우에는 재경기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종합집계

1. 개인전은 각 종목당 4명, 단체전은 4팀이 이상 출전하여야만 점수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출전인원 제한 없이 4명 또는 4팀 이하인 종목도 순위 종합집계로 인정되는 경우는 이 사항을 대회개최계획(안)을 통해 사전에 출전단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3. 종합집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1위(금메달) 1점은 은 2위(은메달)보다 우선이며 2위(은메달)은 3위(동메달)보다 우선한다.
 - 2) 순위(메달)이 동수일 경우에는 단체전 순위(메달)를 우선한다.
 - 2) “2)”의 집계결과도 동점일 경우 출전종목의 인원 수가 많은 수상성적을 우선한다.
 - 3) 기권 및 실격의 경우 참가팀 구성 및 전체 참가인원 수에서 제외한다.
 - 4) 위 사항이 동일 할 경우 8강, 16강 다수 진출 팀 순으로 한다.

제15조 개인별 종합집계

1. 중복 출전이 가능하고 개인 종합집계를 통하여 우수선수상을 시상할 수 있다.
2. 개인별집계방법은 제14조에 따라 운영한다.
3. 개인별 종합집계 시 동점인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제16조 경기 중단상황

1. 대회 진행상의 문제로 경기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선수가 부상 또는 신체·정신적 요인에 의하여 제한된 경기시간 내에 경기를 시작하지 못할 때는 실격처리 한다.

제17조 심판원

1. 연무경기의 심판인원은 5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종합단체연무는 7심제이며 대회개최계획(안)따라 5심제와 7심제에 한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채점은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총점으로 한다.
3. 기록경기의 심판원은 3심제를 원칙으로 하며 대회개최계획(안)에 따라 2심제로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 소 청

소청에 관한 사항은 소청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19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태

경기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는 경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한다.

부 칙 (1999.03.2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6.05.)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1.0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3.1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7.1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01.0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1.26.)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2.15.)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02.14.)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5.0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1.14.)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1.1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3.25.)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1.1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1.1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